

新電氣事業法에 있어서 保安体制의 改編과 指定調査機関(保安協会)

昔 成 煥

<韓電・法令整備委員長>

1. 序 言

筆者は本誌의 前號에 新電氣事業法의 制定公布에 따른 概括的인 紹介를 한바 있다. 그중에서 保安體制의 改編에 對하여서는 와낙 內容이 複雜한 것이기 때문에 說明을 簡略히 하면서 다음 機會로 미룬바 있다.

이제 新電氣事業法에 있어서의 保安體制의 輸廓을 說明하고, 近間 關心의 對象으로 되어있는 指定調査機關(俗稱 保安協會)에 對하여 詳細히 言及하려고 한다.

2. 改編된 安保體制

(1) 保安體制의 概念

電氣事業法에 있어서 “保安體制”라 함은 電氣工作物로부터 各種危害가 發生한 경우에 그 私法上の 責任을 누구가 친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따라서 平素에 누가 電氣工作物의 工事, 維持, 運用等의 管理權을 갖고 손 보아야 되느냐 하는 問題이기도 하다.

歷史的으로 살펴보면, 電氣事業의 初創期에는 電氣工作物 그 自體가 모두 電氣事業者의 所有였기 때

문에 그로부터 發生되는 모든 災害에 對하여 그 責任이 電氣事業者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歲月이 흘러 電氣가 生活必須品이 되어서 物件은 많이 增加되었으며 각자의 電氣需要設備은 各己 그 所有者가 그의 負擔으로 施工하고 管理하는 形便이 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從來의 慣習대로 電氣事業者에게 一種의 管理責任을 賦課하여 保安責任을 지게 하였던 지난날의 法體制는 確實히 矛盾이었다.

이러한 矛盾되는 法體制로 因한不作用은 비단 電氣事業者에게만 不利益한 것이 아니라, 需用家側으로 보아서도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가령 需用家가 自己돈들여서 工事を 마쳐 놓아도 受電에 이르려서는 “檢收”라는 節次를 跳아야 했다. 電氣事業者가 모든 需用家의 些少한 需用設備變動에 대하여서도 過度한 神經을 쓰고, 干渉하여 어떤 경우에

는 어느 쪽이 主人인지 分間할 수 없는 程度로 主客이 바뀌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保安責任을 치는 電氣事業者로서 管理上不得不已한 일이었고 그 때문에 許容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新法에서는 모든 電氣工作物의 管理權과 責任을 그 所有者에게 지웠다. 이것을 이를 불이자면 自主保安體制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保安體制도 自己所有의 物件에 對하여는 그 所有者가 工事, 維持, 運用의 權利를 가지며 또 모든 責任을 진다는 近代私法의 一般原則으로 還元시켰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록 小規模一般家庭의 電燈新設工事일지라도 電氣事業者가 “檢收”할 수도 없거니와 또 할 必要도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制度變更을 “일컬어 保安體制의 改編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電氣事業者는 그의 營業上必要한 경우以外에는 需用家의 設備에 對하여 何等의 干渉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로부터 發生되는 災害에 對하여서도 아무런 責任을 질 必要가 없도록 된 것이다.

(2) 電氣工作物의 合理的인 區分

그러면 新法에 있어서의 保安體制의 具體의인 内容은 무엇인가. 新法에서도 第1條 目的이 分明히 밝히는 바와 같이 公共의 安全을 確保하려는데에는 조금도 다를바 없다. 비록 電氣事業者에게 지워진 保安責任을 벗겨 놓았지만 오히려 더욱 強力하고合理的인 方案을 講究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첫째가 電氣工作物의 概念과 区分을合理的으로 한 것이다. 舊法은 電氣工作物을 一旦 모두 電氣事業用으로 본후 그中에서 特히 官廳의 認可를 받은 것만을 自家用이라고 하여 別途로 取扱하였는데 新法은于先 모든 電氣工作物을 营業用과 非營業用으로 나누고 電氣事業者가 電氣事業에 使用하는 것만을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이라 하였으며 (法第3條第8號), 非營業用을 다시 “一般用”과 “自家用”으로 区分한다 (法第3條 第9, 10號).

따라서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은 舊法의 概念(舊法 第4條 第1項 參照)에서純粹한 事業用 設備에 局限하였다.

그 다음, 一般用과自家用의 区分方法은 먼저 一般用의 概念을 規定하고 그 나머지를 모두自家用으로 본다는 式으로 하였다. (따라서 一般用의 概念規定은 反射的으로自家用의 概念規定이 되는 것이다)

“一般用 電氣工作物”이라 함은 商工部令으로 定하는 小規模의 設備로서, 限定된 地域에서 電氣를 使用하기 위한 電氣工作物을 말한다 (法第3條 第9號). 이 「一般用」이라는 概念은 新法에서 처음 登場된다. 그對象으로 되는 것은 主

로 一般家庭의 屋內設備과 代表의 人 것이다. 앞으로 制定되는 商工部令(電氣事業法 施行規則)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規定될 것이다.

即『電氣事業者로 부터 600V以下의 電壓과 50Kw 以下의 契約最大電力으로 受電하여 同一構内에서 그 電氣를 使用하기 위한 電氣工作物』로서, 僵線路가 受電用外에 따로 없어야 한다.

그밖에 特別히 危險性이 있는 것은 除外하여 自家用으로 하였다. 그 除外한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 自家用 電氣工作物을 設置하는者가 그 同一構内에 設置하는 것.

둘째, 爆發性 또는 引火性 物質이 있어 電氣工作物에 依한 事故發生의 考慮가 많은 場所에 設置하는 것. 即 無砲火藥類 團束法 第3條에서 規定하는 火藥類를 製造하는 事業場이나 鎌山保安法上의 甲種炭礦에 設置하는 것.

세째, 劇場, 映畫館 其他 輸行술目的으로 하는 곳 또는 公會堂 其他 大衆의 集會를 目的으로 하는 建物等에 設置하는 契約最大電力 20Kw以上의 것 등이다.

“自家用 電氣工作物”이라 함은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이 아닌 것 中에서 一般用 電氣工作物以外의 것이다. (法第3條 第10號). 따라서 앞에 說明한 一般用 電氣工作物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自家用 電氣工作物이 되는데, 여기에는 舊法에서 처럼 1, 2種의 区分이 없고 또 設置하는 처음부터自家用이며 官廳의 어떤 許可를 받아서 비로소自家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때 新法 施行과 함께 새로이自家用으로 되는 電氣工作物은 約 4,000程度가 될 것으로豫測된다.

(3) 保安確保의 方案

前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電氣工作物을 3個로 区分하는 理由는 國家의 規制나 保安確保의 方向을 各己 달리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로 어는 電氣工作物이거나 모두 國家가 規制한다. 舊法體制에 있어서는, 電氣工作物의 概念自體가 그렇기도 했지만, 自家用 認可 받은 것을 除外하고는 모두 電氣事業者가 管理하고 干涉했다.

그리서 不良電氣工作物에 對하여는 電氣事業者(예컨대 韓電)가 여리고로 強力한 措置를 取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電氣事業者는 남의 物件에 對하여 何等의 權限이나 責任이 없으므로, 營業上 必要한 事項 以上은 干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電氣事業用과自家用은 嘗初의 設置目的은 다르지만, 規模나 危險度에 있어서는 거의 類似한 點이 많으므로自家用電氣工作物에 對한 規制方法은 大部分電氣事業用電氣工作物에 對한 規制內容을 準用하고 있다 (法第51條).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工事計劃의 認可·申告(法第30條), 第31條) ② 使用前検査, 工程検査(法第32條 第35條) ③ 使用開始申告(法第50條), ④ 事故其他 報告提出(法第73條) ⑤ 施設改善命令(法第36條, 第37條) ⑥ 保安規定의 作成, 遵守(法第39條) ⑦ 保安擔當者(主任技術者の 職務名)의 選任(法第40條) 等이다.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은 徒來와 마찬가지이지만,自家用에 있어서는 術事 電氣事業用에 準하므로서 加一層 規制가 強化되었다. 그러나自家用이라고 모두 다 그령계 하는 것은 아니고 其中 特히 小

規模의 것은 段階的으로 여러 가지例外가 있어서 거의 自主的으로 運營하게 되어 있다.

세계, 一般用 電氣工作物에 對한保安確保方法은 新法 制定으로 因하여 가장 눈에 띄게 變遷되었다. 實務的인 事項은 앞으로 韓國電力側에서 供給規程 改正形式으로 곧公表가 되겠지만, 이제까지 保安責任때문에 까다롭게 問題視하던 “檢收”라는 것은 없어지겠고, 따라서新規需用申請時의 提出書類와 節次도 많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工事, 維持, 運用等一切의 權限과 責任이 그 所有者에게 있기 때문에 電氣事業者에게는 何等의 關係가 없다는 것은前述한 바와 같지만 一般家庭에는 保安狀態를 測定하는 機器가 없는 것이 普通이기 때문에 어떤 方法으로든지 이것을 배꾸어야 할必要가 있다. 新法은 이것을 「調查業務」라 定義하고 『그 電氣를 供給하는 者』(即 普通의 與件에서는 韓電)가 하도록 規定하면서(法第45條 第1項本文) 다만, 出入에 있어서 主人의 承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하지 않아도 無妨하도록 規定하므로서(法同條 同項 但書) 이것이 어려까지나 Service로 提供하는 役務임을 強調하였다.

그러면 이 調查業務의 範圍는 어제까지 인가를 考察해 볼必要가 있다. 이 調查業務는 機器로서 保安狀態(主로 絶緣狀態)를 點檢하고 그結果를 主人에게 通報해 주면 된다. 이 通報는 要式行為일 것을 強制하지 않으므로 口頭로서 充分하다. 다만, 保安狀態가 不良한 경우에는 改修를 促求하고, 改修가 不可할 경우에 危害가 發生할 것임을 親切히 說明해 주면 되는데(法第45條 第2項), 이런 때에는 簡單히 印刷된

說明書를 交付토록 하는 것이 보다能率的일 것이다.

調查結果 保安狀態가 不良한 경우에 그 通報를 받고서도 主人이 改修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때에는 國家(施行令에 依하여 이 權限이 地方長官에게 委任된다. 地方長官은 또다시 각 階層地方行政機關, 例컨대 消防署長等에게 이 權限을 執行시킬 것으로 본다)가 直接介入하여 改修, 移轉, 使用停止 또는 使用制限을 命令하게 된다(法第44條第2項). 이 點이 新法體制에 있어서의 特色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調查業務를 遂行하여야 할 電氣事業者(例컨대 韓電)가 그 業務를 忽慢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勿論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一般用 電氣工作物에서 發生된 災害의 賠償責任이 發生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調查業務가 어려까지나 Service 業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때에는 主務行政官廳인 商工部長官이 一旦 警告를 發하고(法第45條 第3項) 이警告에 不服하여 違反하였을 때에는 바로 行政處罰이 있을 뿐이다. (罰則 第81條 第4號)

이 調查業務는 電氣事業者가 하게 되어 있지만 또 마땅한 者가 있으면 委託함으로써 그 業務遂行의 責務를 벗을 수도 있다.(法第46條) 이 마땅한 者라 함은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法에서는 “指定調查機關”이라는 用語를 쓰고 있다)를 말하는데, 이 認可時에 반드시各者の 能力에 걸맞는 區域을 定하도록 되어 있으므로(法第52條 第2項), 電氣事業者도 그 區域에 限하여 調查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이 指定調查機關을 俗稱 “保安協

會”라 稱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法律上の 用語가 아니고 調査業務의 遂行을 為하여 設立된 特定法人의 固有各稱의 따름이다. (이 指定調查機關에 關하여서는 따로 節을 나누어 說明한다)

(4) 電氣工作物의 工事

舊法에 있어서 電氣工作物이라 함은 于先 모두 電氣事業用으로 使用되는 것을 말하였다(本法에서 電氣工作物이라 함은…… 電氣事業用으로 使用되는一切의 工作物을 말한다. 舊法第4條). 따라서 모든 電氣工作物은 電氣事業者的 所有로 보았고, 電氣事業者가 아닌 者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り 電氣工作物을 施設하거나 變更할 수 없다고 뜻을 박았었다(舊法 第7條, 第2項). 그후 自家用 電氣工作物施設規程(1962. 3. 27 闕令584號)이 制定되어서 『非事業用 強電流電氣工作物 施設者』라는 概念을 規定(同規程第1條)하게 되어서 비로소 電氣事業者以外에 따로 「自家用電氣工作物이라는 概念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이 規程은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法의 性格은 明確하게 規定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舊法體制에서는 工事主體는 오로지 電氣事業者 뿐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相互矛盾되는 狀態下에 있었다. 即 다시 말하면 비록 第2種 自家用 電氣工作物施設者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는 工事を 할 수 없고, 舊法 第7條 第2項에 依하여 오로지 電氣事業者만이 工事を 施行할 수 있다는 形式論理가 成立되었었다.

本稿의 論旨와는 약간의 間隔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1968年度에 論難의 是非가 있었던 所謂 “電氣主任技術者”的 工事 問題를

되도록 볼必要가 있다. 問題의 中心이 自家用電氣工作物 施設者로 되지 않고 하필 그에게 屬屬되어 있는 電氣主任技術者로 되었었던가 하는 것이 奇異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電氣事業者는 工事を 할 수 없다는 意味의當時의 法務部 有權解釋이었다 (1968. 8. 23 법무 80—13760 參照).

다시 말을 바꾸어, 新電氣事業法에서의 電氣工作物에 關한 工事에對하여 살펴보자, 累次 說明한 바와 같이 新法에서는 舊法 第7條 第2項과 같은 規定을 없애면서 法律上工事에 關하여 何等의拘束을 없앨뿐 아니라, 더욱 더 나아가 法律上異論의 餘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모든 電氣工作物의 保安體制가 自主的J임을 強調하는 規定을 電氣工作物의 種類마다 두었다(事業用: 法第36條第1項, 自家用: 法第51條第2項에서 事業用을 準用, 一般用: 法第44條第1項) 即 電氣工作物의 工事, 維持, 運用에 關한 權限과 그로부터 發生되는 모든 責任이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있음이明白하게 되었다. 다만,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과 自家用 電氣工作物에 있어서는 舊法制度에서와 같이 保安의 監督을 시키기 위하여 保安擔當者를 選任하도록 強制하므로서 保安을 確保하고 있다. (法第40條第1項, 同第49條第1項 參照)勿論, 工事를自己가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他人에게 都給을 시키는 경우에는 電氣工事業法(1963. 2. 26公布, 法律第1280號) 第27條의 規定에 依하여 電氣工事業 免許의 所有者에게만 可能하다. 이에 電氣工作物의 所有者가 電氣工事業者에게 都給을 시킬 것인가 또는自己 스스로 違行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전혀 그의 任意에 屬하는 問題

이고 電氣事業法이 부엇이라고 規定한 性質의 것이 아니니. 牛覽천대 별다른 工具나 기술자가 없는一般用電氣工作物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都給시키는 比率이 많을 것이고,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경우와 할지라도 그工事의 性格에 따라서는 都給하는 便이 더욱 經濟的일수도 있어 앞으로도 電氣工事業者를 많이 利用할 것으로 展望된다.

을 것을 對備하여 새로이 第3의 機關의 創設이 要請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新法 第4章 第3節에 指定調查機關에 關한 規定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그 機關의 存立形態 指定하는 要件가 項次, 調查區域, 調查業務의 違行과 主務官廳의 監督等에 關하여 說明한다.

(2) 指定調查機關의 存立形態

法第52條 第3項에는 必要한 事項一切가 商工部令에 委任되어 있기 때문에, 早晚間 制定되는 電氣事業法施行規則이 公布되어야 하겠지만于先 지금까지 研究된 草案에 依하면 ① 調査業務을 目的으로 하고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法人일것 ② 그法人의 任員 또는 社員의 構成이 調査業務의公正한 違行에 支障을 둘 處慮가 없을 것 ③ 調査區域에서 調査業務을 適正하게 違行할 수 있는 財政的基礎 및 技術的能力이 있을 것 ④ 調査業務 以外의 業務를 行하는 경우에 그業務를 行함으로 因하여 調査業務의 適正한 違行에 支障을 둘 處慮가 없을 것……等이다.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法人」이라 함은 非營利法人을 말한다. 指定調查機關은 調査業務을 通하여 利益을 追求하는 것은 適當치 않고 오히려 難害가 發生될 處慮가 있기 때문이다.

「任員 또는 社員의 構成」에 關하여 規定을 넣은 것은 調査業務가 어떤 特定業種 例컨대 工事의 結果에 對하여 調査를 받는 位置에 있는 電氣工事業者の 利益을 代表하는 者가 球事나 監事 또는 社團法人에 있어서의 社員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意向이 業務運營

에反映되어 調査業務의 最正한 實施가 어렵게 되는 사態를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財政的 基礎, 技術的 能力」은 이 法人의 財政的 缺乏함이 없어서 人員을 적게 配置한 結果 調査業務가 簡略化되거나 煩雜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또 從事員들 的 資格(學歷, 經驗) 所要되는 計測器等이 具備되어야 하기 때문에이다.

兼業이 있는 경우에는 調査員의 勞動力 資金等이 이 兼業部門에 흘러 나가기 때문에 規制를 加하는 것이다.

(3) 調査區域

指定申請에 있어서는 調査業務를 行하는 區域(이것을 “調査區域”이라고 한다)을 定하여 提出하여야 되고, 또 그 區域의 變更에 있어서는 増加는 主務官廳의 許可事項이고 減少는 申告事項이다. 이렇게 調査區域을 限制하는 것은 主務官廳이 認可(指定)時에 미리 指定調查機關의 能力의 限界를 定해 놓으므로서, 一般電氣事業者로 부터 委託받을 수 있는 區域의 範圍를 確實하게 하려는 것이다.勿論 이 調査區域은 調査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資格을 얻은 것 뿐이고, 具體적으로 그 區域에서 調査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는 다시 一般電氣事業者로 부터 委託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問題로 되고 있는 指定調查機關을 몇개로 한 것인가 하는 것은 事實上 調査區域의 分割問題이다. 生覺컨대 非營利法人인 指定調查機關이 龐大한 組織과 階層組織을 갖임으로서 招來하는 非能率과 弊端을 考慮한다면, 全國을 單一 區域으로 하느니 보다는 차라

리 管理可能한 數個의 區域으로 分割하므로써 보다 能率의 調査業務가 可能하지 않을까 한다.

(4) 委託의 法的效果

電氣事業者가 指定調查機關에게 調査業務를 委託한 때에는 그 範圍內에서 調査業務은 遂行해야 되는 電氣事業法上의 義務가 指定調查機關에 移轉된다.

그리고 이 委託의 效果는 正當한 委託인 경우에 限하여 效力を 發生한다.例컨대 指定을 받지 못한 著에게 委託을 한다던가 指定을 받았지만, 認可받지 않은 區域에 對하여 委託하는 경우에는 委託의 效果는 생기지 않으므로 如前히 電氣事業者에게 調査義務가 있게 된다.

따라서 指定調查機關도 單純히 保安點檢이라는 役務를 提供할 뿐이지 그로부터 오는 다른 어떤 保安責任을 지는 것은 아니다.(이 點이 이웃나라 日本의 경우와 약간 다른 點이다)

(5) 調査業務

指定調查機關의 法定業務는 調査業務이다. 이業務遂行의 方法과 그 大綱은 業務規程에 定하여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法第55條). 이 業務規程은 大體로 다음과 같은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① 事業所의 所在地 및 그 事業所가 調査業務를 行하는 區域 ② 調査員 및 調査業務에 使用되는 機械器具 其他의 設備의 配置에 關한 事項 ③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工事維持 運用에 關한 保安을 爲하여 委託者인 電氣事業者와의 連絡에 關한 事項 ④ 其他 調査業務에 關한 必要な 事項 等이다.

이 業務規程이 마땅치 못한 경우

에는 商工部長官이 그 變更를 命令할 수가 있다(法第55條 第3項).

(6) 監督

項指定調查機關의 業務에 對하여는 委託者인 電氣事業者は 單純히 私法上의 義務履行 貫否만을 가질 뿐이고, 業務遂行 自體와 其他 公法上의 監督은 直接 認可(指定)權者인 商工部長官의 所管事項이다.

따라서 業務改善命令이나 그밖에 指定의 取消等이 商工部長官의 權限이고, 指定調查機關은 定期 또는 隨時로 그 業務實績에 對하여 商工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報告規則 參照).

(7) 指定調查機關의 兼業

以上에서 說明한 것은 指定調查機關의 尙有의 業務에 關한 것이다. 그밖에 新法體制에서의 役割은 電氣工作物의 保安에 關한 啓蒙活動과 教育이 있고, 또 세로히 自家用 電氣工作物로 된 小規模 自家用의 保安擔當者 業務代行等이다.

앞서 說明한 바와 같이 一定規模以上의 非事業用 設備는 모두 自家用으로 原分하였고, 또 自家用에는 모두 保安擔當者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現實的으로 小規模 工作物에 專任者를 둔다는 것은 人力配置上非能率의 一가지 때문에 이례한 適切한 便法을 考察한 것이다.勿論 이례한 電氣工作物에 專任 保安擔當者를 둘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便을 擇하느냐는 결국 自家用 電氣工作物 設置者の 選擇에 달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絕對轉載禁止>